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전 문 위 원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'98. 1. 9

나. 회부일자 : '98. 1. 9

3. 제안이유

-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 직명 변경
-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 추가지정

4. 주요골자

- 당연직(위원장)중 “부지사”를 “행정부지사”로 직명 변경
- 관계법령 제정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따른 법률)에 따라
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에 정보공개심의회 추
가지정
- 위원회 결정사항중 삭제된 조문의 정리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직제개편에 따른 당연직위원의 직명을 변경하고 관계법령 제정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

그 주요골자에 있어서는

- 당연직 위원중 위원장인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직명을 변경하고
- 관계법령 제정에 따라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위원회에 “정보공개심의회”를 추가 지정하며
- 기타 삭제된 조문의 정리를 하기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